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8호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47호

「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일

산업통상부장관

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2제2항제3호나목 및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에너지(가스) 분야의 정보전송자 기준 및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전송자 기준) 영 제42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서 “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 「민법」 제32조에 따른 한국도시가스협회

제3조(전송 요구 대상 정보) 영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서 “보호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별표와 같다

제4조(전송 업무의 위탁) 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도시가스협회

2. 업무 수행능력, 개인정보 보호체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호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제정 규정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제42조의2제2항제3호나목 및 제42조의4제2항제3호는 2026년 8월 19일까지는 각각 제42조의2제3호나목 및 제42조의4제1항제3호로 본다.

[별표]

전송 요구 대상 정보(제3조 관련)

정보 전송자	정보 항목	세부항목	대상 기간
도시가 스사업자 및 한국도시 가스협회	계약정보	계약번호, 도로명주소, 계약일자	전송 요구 시점
	감면정보	감면자격, 감면금액	
	검침정보	검침방법, 검침일자, 검침시간, 당월가스지침, 전월가스지침, 당월가스사용량, 일별가스사용량, 시간별가스사용량	전송 요구 시점으로 부터 3년
	청구정보	청구연월, 사용시작일자, 사용종료일자, 당월가 스사용량, 청구금액, 기본요금, 사용요금, 부가가 치세, 할인금액, 가산금액	
	납부정보	납부일자, 납부금액, 납부방법	
	미납정보	미납연월, 미납금액	

※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시점에 정보전송자가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거나, 해당 정보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송되지 않을 수 있다.

※ 정보전송자 및 정보항목은 전송시스템이 구축·연계된 경우에 적용하며, 전송 가능한 정보전송자 및 정보항목 현황은 중계전문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